

의안번호	2203294
의 회 인	문대림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8.
추계번호	24A3330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(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)	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 ¹⁾ 은 지식산업센터 ²⁾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(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관리기관은 현행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과,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말함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30조(관리권자 등)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
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)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권자
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
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
5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(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)를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2)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함. 당초 명칭은 “아파트형공장”이었으나,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0.4.12. 법률 개정을 통해 “지식산업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하였음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비적합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을 단속하고³⁾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도록 하는 내용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·점검하는 경우 관리 인력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또는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 - 제21대국회 임기 중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⁴⁾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력·예산 등 관리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점⁵⁾ 등을 고려할 때,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적합업종 확인·점검을 의무화할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소재한 시·군·구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적합업종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배치 인력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,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 등이 될 것이나, 추계에 필요한 사업 수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입주적합업종 확인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여부는 관할 구역 내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규모 등에 따라 시·군·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나, 각 시·군·구의 지식산업센터 소관 업무 담당 인력 운영 현황이나 인력 추가 배치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

3) “지식산업센터서 웬 보험판매?...허술한 관리에 불법 입주”, SBS, 2024.1.30.

4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22773호, 2023.6.20.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)으로,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”하도록 규정하였음

5) 지방자치단체 제출 의견(발췌)

기관명(의견제출일자)	의견 주요내용
남양주시 (‘23.7.11.)	< 개정 및 신설안 부동의 > • (인력·예산 등 관리부담 증가)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호실수가 2,000개에 이르며, 관리 인력 부족 및 업무 위탁시 예산증가 부담

자료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22773호) 검토보고(2023.9.)

- 관내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만 소재하여 기존 담당 인력만으로도 입주적합업종 확인이 용이한 시·군·구가 있는 반면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시·군·구가 있을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상이하어 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* [참고자료]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현황
- 아울러, 입주적합업종 확인·점검 업무의 수행 방식(직접/위탁)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의 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재 시·군·구별 인력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현황

연도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현황(2024년 8월 기준)

(단위: 건)

연도	~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건수	601	65	87	91	109	104	108	112	151	79	32	1,539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전국 시도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현황(2024년 8월 기준)

(단위: 건)

시도별	설립승인	시도별	설립승인
강원특별자치도	21	세종특별자치시	3
경기도	716	울산광역시	7
경상남도	31	인천광역시	81
경상북도	19	전라남도	18
광주광역시	32	전북특별자치도	20
대구광역시	37	제주특별자치도	6
대전광역시	14	충청남도	38
부산광역시	72	충청북도	34
서울특별시	390	합계	1,539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산업단지 등 입지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현황(2024년 8월 기준)

(단위: 건)

구분	계획입지	개별입지	기타	합계
설립승인	601	934	4 ¹⁾	1,539

주: 1) 자유무역지역 4건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